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금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988

발의연월일: 2022. 8. 24.

발 의 자:양금희·김미애·김선교

노용호 • 윤상현 • 윤재옥

이만희 · 정찬민 · 조명희

한무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"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"은 2009년 최초 출시된 이후,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통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음.

그러나 현금구매 시 5~10%를 선할인 받은 온누리상품권이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 후 환전되는 부정유통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,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.

특히 소속 전통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한 가맹점,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가맹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,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

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의 말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 으로 하고,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(안 제26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).
- 나.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26조의6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4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- ⑥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부터 7일까지 사이에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고,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가맹점 등록의 갱신 또는 변경의 신청을 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6조의6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하여야 한다.
- 1. 가맹점이 소속 시장 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
- 2. 제26조의4제5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
- 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,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제26조의4제6항 중 가맹등록 갱신과 관련하여,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등록 되어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 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가맹등록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의4(가맹점의 등록) ① ~	제26조의4(가맹점의 등록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
	3년으로 한다.
<u> <신 설></u>	⑥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
	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
	유효기간 만료 전 90일부터 7
	일까지 사이에 갱신신청을 하
	여야 하고, 등록한 사항 중 대
	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
	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맹점 등
	록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
	다. 이 경우 가맹점 등록의 갱
	신 또는 변경의 신청을 하는
	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
	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
	준용한다.
제26조의6(가맹점 등록의 취소	제26조의6(가맹점 등록의 취소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
	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	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
	맹점의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
	하여야 한다.

- 1. 가맹점이 소속 시장 등의

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
- 2. 제26조의4제4항에 따른 가

 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

 과한 경우
- 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 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 거나,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을 말소한 경우